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036

발의연월일: 2024. 11. 29.

발 의 자: 안규백·박홍배·조인철

이개호 • 추미애 • 이광희

박범계 · 김기표 · 정성호

안태준 · 김준혁 · 이재관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역량은 크게 성장하였으며, 동시에 함정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 능력도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우리 기술로 3천톤급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첨단 전력을 건조하여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기술력의 성장과 달리 해상 전력의 안전성에 관한 법과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함정, 잠수함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는 바 다라는 작전환경의 특수성과 무기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 생했을 경우 해당 무기체계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함정(艦艇)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를 인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함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함정의 수출을 지원하여 국군장병 및 국민에 대한 안전과 국내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함정"이란 국군이 사용하거나 군사용으로 국외에 수출하기 위한다음 각 목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수상함
 - 나. 잠수함
 - 다. 전투근무지원정
- 2. "감항성(堪航性)"이란 함정이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운항조건에서 안전하 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 3. "감항인증(堪航認證)"이란 함정이 감항성을 갖추고 그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에 대한 정부의 인증을 말한다.
- 4. "함정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함정을 연구·개발하는 사업
- 나. 함정을 구매하는 사업
- 다. 함정을 개조 · 개량하는 사업
- 라. 함정의 부품·구성품 및 무기·장비 등을 제작·개조 또는 개 량하여 함정에 장착하는 사업
- 5. "사업관리기관"이란 개별 함정 사업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는 방위사업청 소속 기관, 육군·해군·공군(이하"각 군"이라 한다), 정부출연기관 또는 함정 관련 업체 등과 이들로부터 함정 사업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 제3조(경찰용 선박의 감항인증) 이 법의 감항인증에 관한 규정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찰용 선박에 준용한다. 이 경우 "함정"은 "경찰 용 선박"으로 본다.
- 제4조(표준감항인증기준의 고시) ① 방위사업청장은 함정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사업추진 단계별로 함정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관리기관의 장이 함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기술기준 등(이하 "표준감항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 하여야 한다.
 - ②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 방부령으로 정한다.
- 제5조(감항인증의 절차 등) ①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함정에 관하여 국 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하

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함형별 감항인증기준 작성지침을 포함한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을 사업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감항인증 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함형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에게 함형별 감항인증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지원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방위사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사업관리기관의 장이 수립한 함형 별 감항인증 계획안을 제10조에 따른 함정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관리기관의 장, 함정 사업과 관련된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함형별 감항인증 계획에 따라 함정 사업이 함형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단계별 감항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 조제4호나목의 구매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감항성 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1. 형식인증: 함정 설계가 함형별 감항인증기준을 충족하여 안전한 항해에 적합하다는 인증
- 2. 생산확인: 함정이 설계에 맞게 생산될 수 있는 기술, 설비, 인력

및 품질보증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주요안전품 목 관리

- ⑥ 방위사업청장은 제5항에 따른 감항성 심사를 한 후 제10조에 따른 함정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계별 감항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감항인증 결과를 사업관리기관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서 발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함형별 감항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감항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국방부렁으로 정한다.
- ⑧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형식인증 또는 제6항에 따른 감항인증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형식인증 또는 감항인증을 받은 경우
- 2. 함정이 함형별 감항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6조(연구 등 목적의 감항인증) ① 제5조에도 불구하고 연구·시험·수출·홍보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함정에 대하여 감항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관리기관의 장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에게 감항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여 함정이 운항에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운항 제한사항 및 운항안전을 위한 조건 등 국방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감항인증서를 신청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함정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함정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7조(표준감항인증기준 등의 적용 제외) 방위사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5조에 따른 감항인증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별도로 정할수 있다.
 - 1. 수출용 함정에 대하여 해당 함정의 수입국에서 감항인증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표준감항인증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 2. 국외에서 수입하는 함정으로서 그 함정을 제작한 국가에서 감항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경우
 - 3. 제작국가에서 감항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받은 함정 부품 · 구성품 등을 수입하여 국군이 운용하는 같은 계열의 함정에 장 착하는 경우
 -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표준감항인증기준이나 제5조에 따른 감항 인증 절차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함정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 제8조(감항성 유지 및 기술지원) ① 각 군 참모총장 등 함정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은 함정이 함형별 감항인증기준(제5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감항인증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도록 감항성을 유지하여야한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함정을 운용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항성 유지에 필요한 기술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9조(수수료) 방위사업청장은 함정에 대한 감항인증 또는 감항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에게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 제10조(함정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감항인증 및 관련 주요정책과 감항인증 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함정 감항인증심의위원회(이하"인증위원회"라하다)를 둔다.
 - ② 인증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감항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2. 표준감항인증기준의 작성 및 변경 고시에 관한 사항
 - 3. 함형별 감항인증 계획의 확정에 관한 사항
 - 4. 감항성 심사 결과의 확인에 관한 사항
 - 5.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 간의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

-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방위사업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각 군 및 감항인증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방위사업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④ 인증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증위원회에 함정 감항 인증 기술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함정 감항인증 자문위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장 소속으로 5명 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은 방위사업청장이 정한다.
- 제12조(감항인증 기술 자료의 지원·유지) ① 방위사업청장은 함정의 운항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술 자료를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참모총장, 사업관리기관의 장 또는 군용함 정의 구매자가 요청할 경우 제1항에 따라 관리·유지되는 기술 자료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각 군 참모총장 및 그 밖에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은 감

항인증을 받은 함정의 운항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함정 또는 그 부품·구성품, 장비 등의 개조·개량, 형상 및 구조변경 등을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에게 그 내용과 관련 기술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 제13조(함정 감항인증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 증 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군, 정부출연기관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 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을 함정 감항인증 전문기관 (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감항인증 전문인력과 능력의 확보 및 유지관리
 - 2. 제14조에 따른 주관기관의 감항인증에 필요한 업무 지원ㆍ협조
 - 3.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감항인증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④ 방위사업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전문기관으로서의 업무를 1년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⑤ 방위사업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4조(함정 감항인증 주관기관의 지정 등) ①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 증 업무의 객관성·효율성·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감항인증을 신청받은 함정의 종류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함정 사업별로 전문기관 중 1개 기관을 함정 감항인증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주관기관은 방위사업청장의 조정·통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감항인증 업무 주관
 - 2. 감항인증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업무 지원
 - 3. 감항인증 관련 자료의 조사 · 분석
 - 4. 감항인증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지원
 - 5.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이 감항인증 관련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15조(예산의 지원) ①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 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

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각 군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 감항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평가·분석·검증 장비, 시설 및 전문인력 등 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제16조(업무 지원 요청) 방위사업청장은 감항인증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등의 지원을 각 군 참모총장 및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인력·장비·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위임·위탁 및 재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각 군에 위 임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각 군 및 전문기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감항인증과 관련된 기관이나연구기관의 장, 함정 및 그 부품·구성품을 제작·개조·개량 또는구매하는 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항인증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에 따른 감항인증은 이 법 시

행 이후 착수하는 함정 사업부터 적용한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착수한 함정 사업 중 감항인증이 사업추진에 미치는 영향, 수출 가능성 등을고려하여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법을 적용하여 감항인증을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감항인증기준 및 사업별·함형별 감항인증기준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위사업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제3조(감항인증에 관한 준비행위) 방위사업청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전 문기관 및 주관기관의 지정, 감항인증 전문인력의 양성, 그 밖에 감 항인증 업무 추진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하거나 관련 기관으로 하여 금 준비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